

법창의센터 시행세칙

2018. 7. 1. 제정
<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>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법률가의 전문화 교육 및 법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법창의센터(Center for Law & Creativity: CLC)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법창의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함) 산하에 설치한다.

제3조(설립취지) 로스쿨 제도 정착에 따른 법률가의 미션과 법률시장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, 법률가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법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 책임 수행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립한다.

제4조(사업) 제3조의 설립취지에 맞추어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전문분야 법률가 창업 지원
2. 법률 실무교육 지원
3. 국내외 교육·연구기관, 기업, 로펌, 국가기관 등과 인적·물적 교류
4. 그밖에 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사업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1절 임원 및 고문

제5조(임원의 구성 및 자격) ①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소장: 1명
2. 부소장: 1명

② 고려대학교 교원이 아닌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다.

제6조(임원의 임명) 대학원장은 기획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소장과 부소장을 임명한다.

제7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,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고문) ① 센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문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은 센터의 사업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기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
제2절 위원회

제10조(기획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기획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기획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연직 위원(소장, 부소장)
 2. 당연직 위원 외에 소장이 지명하는 10명 내외의 사람
- ③ 소장과 부소장은 각각 기획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.
- ④ 기획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업계획 수립
 2. 센터에 관한 각종 규칙의 제정·개정
 3. 센터 소장 추천
 4. 창업보육 대상 팀 선정
 5. 그밖에 센터의 기획·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부의한 사항

제11조(융합자문위원회) ① 센터 또는 센터와 연계된 기관·조직의 운영·활동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융합자문위원회를 둔다.

- ② 융합자문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소장은 융합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임명한다.

제12조(위원의 자격과 임기) ① 고려대학교 교원이 아닌 사람도 기획운영위원회 또는 융합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

- ② 기획운영위원회 및 융합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13조(위원의 제명) ① 기획운영위원회 또는 융합자문위원회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센터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명할 수 있다.

② 제명은 기획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.

제14조(정족수) ①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절 연구요원과 사무국

제15조(연구요원의 자격) 필요에 따라 센터에 연구요원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문연구위원: 해당 분야에서 명망이 있고 경력과 식견이 탁월한 사람

2. 선임연구원: 석사학위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
3. 연구원: 석사과정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
4. 연구보조원: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문적 소양이 있는 사람

제16조(연구요원의 근무기간 및 해임) ① 연구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재임용할 수 있다.

② 연구요원의 해임에 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.

제17조(사무국) ① 센터의 사업에 관한 실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국에는 상근 또는 비상근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재 정

제18조(재산) 센터의 재산은 후원금 또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.

제19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고려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0조(재정의 운영) 센터의 재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고려대학교의 학교규칙에 따른다.

제4장 창업보육 플랫폼

제21조(설치와 명칭) ① 법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기구로 센터 내 창업보육 플랫폼(이하 “플랫폼”이라 함)을 설치한다.

② 플랫폼의 명칭은 “高麗精于 창업보육 플랫폼”(Korea-Jungwoo Law Incubating Platform: “KJLIP”)으로 한다.

제22조(플랫폼의 활동방식) ① 플랫폼은 창업보육 대상 팀(이하 “팀”이라 함) 단위로 활동한다.

② 팀은 3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③ 팀은 고려대학교 및 센터와 독립된 지위에서 스스로의 책임 아래 활동한다.

제23조(팀의 선정) ① 팀의 선정은 추천·신청 또는 영입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기획운영 위원회가 결정한다.

② 팀의 선정에 있어서는 전문성의 정도, 법률문화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.

③ 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팀원 중 최소 1명이 고려대학교 법조인교우회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.

제24조(팀에 대한 지원방법) ① 센터는 팀에게 고려대학교 교내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창업

보육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팀이 대학원 교수, 제26조가 정하는 협력기관, 융합자문위원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원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와 팀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

제24조(플랫폼에 대한 지원기간)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(기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) 1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

제5장 협력기관

제25조(협력기관의 지정) ① 센터는 외부 법률사무소·법무법인·법무조합 및 회계법인·공공기관·기업 등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협력기관은 고려대학교 및 센터와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26조(업무협력의 범위) 센터는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.

1. 대학원 학생에 대한 실무교육
2. 변호사의 전문화 및 플랫폼 활동에 필요한 지원
3. 그밖에 법률문화 발전에 관한 업무

제27조(리걸클리닉의 지원) 협력기관은 대학원 리걸클리닉의 실무교육 및 공익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